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1 발의연월일: 2025. 01. 22.

발 의 자:신성범・김예지・김용태

김장겸 · 김태호 · 박정하

박충권 • 이양수 • 이종욱

이철규・조은희・주호영

최수진 • 한기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 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사업자의 지 위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위치정보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 38조제1항·제2항)
 - 1)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위치정보산업을 새롭게 정의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 및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 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 나.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로 일원 화함(안 제2조 등).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개념을 구분을 하던 것을 위치정보 로 일원화함.

다. 위치정보사업의 일원화(안 제2조 등)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 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 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통합함.

라. 위치정보사업자 일원화 및 규제 완화(안 제5조 및 제7조)

기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규제해 온 것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일원화하며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의 경우에도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

마.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신고 기간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및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표시·통지로 규제 완화(안 제18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시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특정 방식으로 표시·통지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함.

사. 수탁자에 대한 업무위탁(안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탁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

는 의무 규정을 신설함.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정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 2. "위치정보주체"란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 3.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란 위치정보주체(수집 대상자), 수집일시·방법·경로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제공 서비스명, 이용·제공 일시 및 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4.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5. "위치정보산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기·제품·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긴급구조 등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4.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및 위치정보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5.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서비스(이하 "위치정보서비 스"라 한다)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6. 위치정보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7. 위치정보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②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정보사업 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제3항·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 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사업폐지명령 또는 신고사항 말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 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7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②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상공인등이 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본다.
-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수·상속·합병·분할을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과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휴업: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 2. 제2항에 따른 폐업: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 ④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자 또는 소상공인등(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은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휴업: 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로 한정한다)
- 2. 제2항에 따른 폐업: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 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주체 및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이 위치정보의 보호, 공

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6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 2.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수 없게 된 때
 - 3.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요청한 때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 2. 제9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때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 개시 여부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치정보서비스의 정지·삭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의무 확인이 필요한 자에 가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확인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상호·전자우편주소의 제공, 신고 의무의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앱 마켓을 통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서비스를 30일의 범위 내 에서 임시적으로 정지(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하거나 삭제하

- 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앱 마켓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지·삭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9조제4항, 제24조제1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2조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 우
 -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위치정보 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

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

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 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 제14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 2.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 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소유자 또는 점유 자의 동의 없이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 또는 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지가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거나 위치정보가 노출되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을 설치하고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의 기술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 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 ·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 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2. 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6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3.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및 내용
 - 4.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서비스별 명칭 및 내용
 - 5.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 가

- 6.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목적 및 보유기간
- 7.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 8.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9.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등)
- 10. 그 밖에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이하, 이 항에서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위치정보주체가 제27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
- 2. 매회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
-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 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19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8조제1항의 이용·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공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 하는 자
 -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의무자가 다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위치정보 등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① 위치정보사업

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제 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21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 제22조(업무위탁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제한) 수탁자(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서 같다)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수탁 자"로 본다.

- 제23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
 - 3.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4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 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절 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 제25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 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위치정보 및 위치정 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 는 철회하는 부분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 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26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제4항·제2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

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8조(손해배상)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면할 수 없다.

제29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사업과 관련 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30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의무자에게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및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제공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위치정보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위치 정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때 요청을 받은 제공의무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수집되는 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제공의무자는 해당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수집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제공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위치정보주 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의무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제공의무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요청자
- 2. 요청 일시 및 목적
- 3. 제공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 4.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 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 제31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의무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의무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공의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30조제1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30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30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비용의 감면) 제공의무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4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제공의무자는 제30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때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위치정보사업자
 - 2. 위치정보 관련 법인 단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④ 실태조사의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 제3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 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에 관 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을 통해 할 수 있다.
- 제39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

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41조(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 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수 있다.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 3. 제37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 4.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 개한 자
 - 2. 제18조제1항 · 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

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 공받은 자

-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4. 제21조(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위 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 5. 제30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 6. 제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

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한 자
 -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30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노출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 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과 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6. 제18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한 자
- 8. 제23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4조제2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 11. 제25조제4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

기하지 아니한 자

-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
- 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 14.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한 자
- 15.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6.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7. 제41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 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34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 제2항(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⑤ 제2항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50조(적용제외) ① 이 법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 2항,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 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특정한 사람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각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자는 각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제

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자는 각각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치정보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업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사업 자는 제1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 다.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 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주체

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 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1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로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 ③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호바목1)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⑧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한다. 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하고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하는 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한다.